

구분	약관명	해당약관 조항	
		변경전	변경후
여신	[여신030-05] 지급보증거래 약정 서	<p>제1조</p> <p>귀행의 전술한 지급보증서 / 손해담보증서 / 보증신용장(이하 “본 보증서”라고 함) 발급과 관련하여, 본인은 /당사는 이에 본 보증서와 관련 하여 또는 <u>여하한 이유로든</u> 본 보증서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귀행이 입거나 받게되는 또는 귀행에 초래되는 모든 소송, 청구, 최고, 채무, 손해, 손실, 부담 기타 제비용에 대하여 귀행(귀행의 승계인과 양수인을 포함함)에 보상하고, 귀행이 본 보증서에 의하거나 본 보증서로 인하여 또는 본 보증서와 관련하여 귀행이 수시로 청구 또는 최고를 받거나, 귀행이 지급해야 하거나 혹은 귀행이 지급, 부담 또는 감수할 의무가 있게 된 모든 금액 및 채무에 대하여 즉시 <u>귀행에 지급할 것을 무조건적으로 취소불능하게</u> 약정합니다.</p>	<p>제1조</p> <p>귀행의 전술한 지급보증서 / 손해담보증서 / 보증신용장(이하 “본 보증서”라고 함) 발급과 관련하여, 본인은 /당사는 이에 본 보증서와 관련 하여 또는 본 보증서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귀행이 입거나 받게되는 또는 귀행에 초래되는 모든 소송, 청구, 최고, 채무, 손해, 손실, 부담 기타 제비용에 대하여 귀행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 귀행(귀행의 승계인과 양수인을 포함함)에 보상하고, 귀행이 본 보증서에 의하거나 본 보증서로 인하여 또는 본 보증서와 관련하여 귀행이 수시로 청구 또는 최고를 받거나, 귀행이 지급해야 하거나 혹은 귀행이 지급, 부담 또는 감수할 의무가 있게 된 모든 금액 및 채무에 대하여 즉시 <u>귀행에 지급할 것을 약정합니다.</u></p>
		<p>제6조</p> <p>보증서에 의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귀행이 성실하게 취한 조치는 본인을/당사를 기속하며 귀행은 <u>이로 인하여 본인/당사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u></p>	<p>제6조</p> <p>보증서에 의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귀행이 성실하게 취한 조치는 본인을/당사를 구속하며 귀행은 <u>귀행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제외하고 본인 /당사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u></p>
외환	[외환 005-03] 수입거래약정서	<p>제 7조 제3 항</p> <p>은행의 수입신용장 조건 불일치에 관한 조회에 대하여 수입자의 회보가 <u>은행의 관련규정이 정한 기간내에</u> 도착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수입환어음 또는</p>	<p>제 7조 제3 항</p> <p>은행이 수입신용장 조건 불일치에 관한 조회요청시, 수입자의 회보가 <u>은행과 수입신용장개설신청서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u> 도착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p>

구분	약관명	해당약관 조항	
		변경전	변경후
		<p>선적서류의 매입, 지급, 인수에 대한 동의 또는 거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u>이로 인한 모든 비용과 책임은 수입자가 부담한다.</u></p>	<p>은행은 수입환어음 또는 선적서류의 매입, 지급, 인수에 대한 동의 또는 거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u>비용과 책임은 은행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자가 부담한다.</u></p>
		<p>제8조 제3항</p> <p>수입자가 결제자금을 원화로 납입하는 경우, 수입환 어음의 결제시기는 수입자의 납입일자에 불구하고 은행의 외화사정 등에 의하여 <u>은행이 결제통화를 매입할 수 있는 날로 한다.</u> 수입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i) 지연이자와 (ii) 납입시와 수입환어음에의한 실제 외환 매입일간의 환율의 변동에 따른 환차를 전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금액을 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원화 또는 기타 통화로 은행에 지급한다. 또한 <u>수입자는, 이 약정서에 의한 원화의 외국통화로의 환전에 적용될 외국환 규정 또는 제한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은행에 보상한다.</u></p>	<p>제8조 제3항</p> <p>수입자가 결제자금을 원화로 납입하는 경우, 수입환 어음의 결제시기는 수입자의 납입일자에 불구하고 은행의 외화사정 등에 의하여 은행이 결제통화를 매입할 수 있는 날로 <u>하며, 은행은 결제시기가 납입일자와 달라지는 경우 수입자에게 통보하기로 한다.</u> 수입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i) 지연이자와 (ii) 납입시와 수입환어음에의한 실제 외환 매입일간의 환율의 변동에 따른 환차를 전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금액을 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원화 또는 기타 통화로 은행에 지급한다. 또한 <u>이 약정서에 의하여 원화를 외국통화로 환전하는 경우 이에 적용되는 외국환 규정 등의 제한으로 인해 은행에 손해가 발생하는 때에는 은행은 그 손해를 수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u></p>
		<p>제15조 제1항</p> <p>수입자는 제1호 각호의 거래에 따른 이자, 할인료, 지연배상금, 수수료, 우편료, 전신료, 기타 비용 및 은행 또는 환거래은행 등의 권리행사, 권리보전, 담보의 취득 및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과 손해를 은행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은행이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u>은행의 관련 규정이 정한 기간내에</u> 지급한다. 다만,</p>	<p>제15조 제1항</p> <p>수입자는 제1호 각호의 거래에 따른 이자, 할인료, 지연배상금, 수수료, 우편료, 전신료, 기타 비용 및 은행 또는 환거래은행 등의 권리행사, 권리보전, 담보의 취득 및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과 손해를 은행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은행이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u>곧 지급하기로 한다.</u> 다만, 수입자가 은행의</p>

구분	약관명	해당약관 조항	
		변경전	변경후
		수입자가 은행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한다.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한다.
[의환 019-02] 내국신용장거래 약정서	제5조 수수료, 비용 및 손해의 부담 ① 본인은 <u>은행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u> 추가로 발생한 것이 아닌한 제1조의 거래에 따른 이자, 할인료, 수수료, 지연배상금, 손해배상금, 기타 부대비용 및 은행의 권리행사, 권리보전, 담보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비용, 운임, 보험료, <u>기타 모든 비용 및 손해를 부담하여</u> , 은행이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곧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본인이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제5조 수수료, 비용 및 손해의 부담 ① 본인은 <u>은행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u> 발생한 것이 아닌한 제1조의 거래에 따른 이자, 할인료, 수수료, 지연배상금, 손해배상금, 기타 부대비용 및 은행의 권리행사, 권리보전, 담보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비용, 운임, 보험료, <u>기타 비용 및 손해를 부담하여</u> , 은행이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곧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본인이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의환 004-03] 수출거래약정서	제 7 조 환거래은행 및 송달방법의 선정 환거래은행의 선정과 수출환어음 또는 선적서류의 송달방법은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의 조건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이를 달리 선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는 <u>은행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출자가 부담한다.</u>	제 7 조 환거래은행 및 송달방법의 선정 환거래은행의 선정과 수출환어음 또는 선적서류의 송달방법은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의 조건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이를 달리 선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는 <u>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수출자가 부담한다.</u>	
	제 9 조 수출화물의 운임, 보관료, 보험료 및 보전에 관한 비용	제 9 조 수출화물의 운임, 보관료, 보험료 및 보전에 관한 비용	

구분	약관명	해당약관 조항	
		변경전	변경후
		<p>및 손해</p> <p>수출환어음 또는 선적서류 대금의 지급의무자 (신용장발행은행, 신용장확인은행, 수출환어음의 인수인, 수출환어음의 지급인 등 기타 수출환어음 또는 선적서류 대금의 지급을 해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음)가 지급, 인수 또는 채무의 확인을 거절한 경우 은행 또는 환거래은행 등은 수출화물의 양류, 통관, 입고, 부보, 전매 등 수출화물의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말미암은 비용 및 손해는 <u>은행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출자가 부담한다.</u></p>	<p>및 손해</p> <p>수출환어음 또는 선적서류 대금의 지급의무자 (신용장발행은행, 신용장확인은행, 수출환어음의 인수인, 수출환어음의 지급인 등 기타 수출환어음 또는 선적서류 대금의 지급을 해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음)가 지급, 인수 또는 채무의 확인을 거절한 경우 은행 또는 환거래은행 등은 수출화물의 양류, 통관, 입고, 부보, 전매 등 수출화물의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말미암은 비용 및 손해는 <u>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수출자가 부담한다.</u></p>
		<p>제 10 조 지급 등의 연기</p> <p>제 2 항 <u>제 1 항과 관련하여 생기는 손해는 수출자가 부담한다.</u></p>	<p>제 10 조 지급 등의 연기</p> <p>제 2 항 <u>제 1 항과 관련하여 생기는 손해는 은행의 고의나 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자가 부담한다.</u></p>
		<p>제 11 조 참가인수 등</p> <p>제 2 항 <u>제 1 항과 관련하여 생기는 손해는 수출자가 부담한다.</u></p>	<p>제 11 조 참가인수 등</p> <p>제 2 항 <u>제 1 항과 관련하여 생기는 손해는 은행의 고의나 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자가 부담한다.</u></p>
		<p>제 16 조 수출환어음 등의 반환</p> <p>제 4 항 <u>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 및 손해는 은행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출자가 부담한다.</u></p>	<p>제 16 조 수출환어음 등의 반환</p> <p>제 4 항 <u>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 및 손해는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수출자가 부담한다.</u></p>

구분	약관명	해당약관 조항	
		변경전	변경후
[외환 017-01] 수출채권할인 기본계약	제 3조 환매와 연체 이자 3.05 고객이 본계약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해당기일까지 정산하지 않은 경우 고객은 이로 인해 발생한 <u>모든 비용 및 손실에 대해 은행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u>	제 3조 환매와 연체 이자 3.05 고객이 본계약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해당기일까지 정산하지 않은 경우 은행은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 및 손실에 대해 은행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 7조 수익보장 7.01 (b) 고객은 은행이 납부한 세금 또는 이로 인해,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u>모든 채무 (벌금, 이자, 비용 포함) 전액에 대해, 이러한 세금이 정확히 그리고 합법적으로 산출된 것인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은행에 보상한다.</u> 또한 고객은 수출채권 채무자의 결제 금액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u>세금의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도 은행에 보상할 책임이 있다.</u>	제 7조 수익보장 7.01 (b) 고객은 은행이 납부한 세금 또는 이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벌금, 이자, 비용 포함)에 대해, 은행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은행에 지급하기로 한다. 또한 고객은 수출채권 채무자의 결제 금액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세금의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도 은행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은행에 보상하기로 한다.	